

반환기간 5년 이상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

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(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)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63조(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) 제4항과 관련하여 반환기간 경과 후에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강릉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 고 내 용 : 반환기간 5년 이상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
2. 공 고 기 간 : 2025. 1. 8. ~ 2025. 1. 23.(15일간)
3. 공 고 방 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4. 세입귀속일 : 2025. 1. 31. 이후
5. 근거법령
 - 지방재정법 제82조(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)
 -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(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) 제4항
6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:

현금종류	예치방법	고지번호	고지일자	납부자	적요	수납일자	수납금액	지급액	반환기일	귀속 대상금액
고용보험료	현금	2748	2019-10-31	김○년	원천세 미징수분	2019-10-31	22,720	0	2019-11-10	22,720
고용보험료	현금	2570	2019-10-04	김○년	원천세 미징수분	2019-10-04	18,980	0	2019-11-10	18,980

공고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목적, 보관기간,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공고기간 중 보정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(T.031-6193-6771)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건 세입세출외현금을 용인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.

2025년 1월 8일

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장

